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운영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존속기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범위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목적과 취지에 맞는 회계의 운영을 점검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집행부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회계가 올바르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